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3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 1. 노선명(노선연장),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 우이-신설 연장선(3.53km) : 우이역~쌍문동~방학동~방학역
- 동북선(12.34km) : 왕십리역~고려대역~미아삼거리~월계동~중계동
- 면목선(9.05km) : 청량리역~전농사거리~장안교~면목동~신내동
- 서부선(12.05km) : 새절역~연희동~신촌역~여의도~노량진~장승배기역
- DMC경전철(6.5km) : 수색역~상암7단지~하늘공원~월드컵경기장~수색역
- 목동선(10.87km) : 신월동~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목동~당산역
- 신림선(7.82km) : 여의도~보라매역~당곡사거리~신림역~신림동~서울대앞

#### 2. 건설기간 : 2009~2017(2014년부터 단계별 개통)

#### 3. 정거장위치

○우이-신설 연장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00.0	0K000.0m	지하	우이-신설경전철 우이역
102	1K320.0	1K320.0m	지하	선덕중교입구 사거리
103	2K350.0	1K030.0m	지하	성원아파트 사거리
104	3K500.0	1K150.0m	지하	방학역(1호선)

○동북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80.0	0K080.0m	지하	왕십리역(2,5,중앙선)
102	1K010.0	0K930.0m	지하	동명초교 인근
103	1K980.0	0K970.0m	지하	제기동역(1호선)
104	3K225.0	1K245.0m	지하	고려대역(6호선)
105	3K900.0	0K675.0m	지하	종암우체국
106	4K720.0	0K820.0m	지하	종암경찰서
107	5K335.0	0K615.0m	지하	미아삼거리역(4호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8	6K170.0	0K835.0m	지하	창문여고 인근
109	7K140.0	0K970.0m	지하	드림랜드앞
110	8K000.0	0K860.0m	지하	월계2교 인근
111	9K180.0	1K180.0m	지하	월계역(1호선)
112	9K920.0	0K740.0m	지하	하계역(7호선)
113	10K620.0	0K700.0m	지하	대진고교앞
114	11K940.0	1K320.0m	지하	은행사거리

## ○면목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140.0	0K140.0m	지하	청량리역(1호선)
102	1K140.0	1K000.0m	지하	서울시립대앞
103	1K985.0	0K845.0m	지하	전농동사거리
104	2K965.0	0K980.0m	지하	장안동삼거리
105	3K955.0	0K990.0m	지하	장안교사거리 인근
106	4K980.0	1K025.0m	지하	면목역(7호선)
107	5K802.0	0K822.0m	지하	겸재삼거리
108	6K360.0	0K558.0m	지하	우림시장
109	7K015.0	0K655.0m	지하	신내 지하차도
110	7K740.0	0K725.0m	지하	중량구청사거리
111	8K260.0	0K520.0m	지하	능산삼거리
112	9K020.0	0K760.0m	지상	6호선 신내차량기지 인근

## ○서부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150.0	0K150.0m	지하	새절역(6호선)
102	0K890.0	0K740.0m	지하	충암고교앞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3	1K880.0	0K990.0m	지하	명지대학교
104	3K630.0	1K750.0m	지하	연희삼거리
105	4K730.0	1K100.0m	지하	연세대앞사거리
106	5K490.0	0K760.0m	지하	신촌역(2호선)
107	6K290.0	0K800.0m	지하	광흥창역(6호선)
108	8K520.0	2K230.0m	지하	서강대교남단교차로
109	9K350.0	0K830.0m	지하	MBC앞사거리
110	10K180.0	0K830.0m	지하	여의도성모병원사거리
111	11K110.0	0K930.0m	지하	노량진역(1,9호선)
112	11K870.0	0K760.0m	지하	장승배기역(7호선)

## ○DMC경전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00.0	0K000.0m	고가	수색역(6호선)
102	0K520.0	0K520.0m	고가	수색역(경의선)
103	0K930.0	0K410.0m	고가	상암초교
104	1K390.0	0K460.0m	고가	상암중학교
105	1K750.0	0K360.0m	고가	상암고등학교
106	2K070.0	0K320.0m	고가	월드컵파크 7단지
107	2K490.0	0K420.0m	고가	상암공영차고지
108	3K170.0	0K680.0m	고가	서부면허시험장
109	3K825.0	0K655.0m	고가	난지천공원
110	4K745.0	0K920.0m	고가	월드컵경기장
111	5K600.0	0K855.0m	고가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 ○목동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90.0	0K090.0m	고가	화곡로입구사거리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2	0K475.0	0K385.0m	고가	신월사거리
103	1K100.0	0K625.0m	고가	신월정수사업소앞
104	2K090.0	0K990.0m	고가	과학수사연구소입구
105	2K745.0	0K655.0m	고가	강월초교입구사거리
106	3K765.0	1K020.0m	고가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107	4K875.0	1K110.0m	지하	신타리공원앞
108	5K870.0	0K995.0m	지하	양천구청
109	6K920.0	1K050.0m	지하	오목교역(5호선)
110	7K610.0	0K690.0m	지하	SBS서울방송 인근
111	8K745.0	1K135.0m	지하	월촌중학교 인근
112	10K780.0	2K035.0m	지하	당산역(2호선)

## ○신림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130.0	0K130.0m	지하	셋강역(9호선, 여의교사거리)
102	0K800.0	0K670.0m	지하	대방역(1호선)
103	1K560.0	0K760.0m	지하	성남고교입구
104	2K390.0	0K830.0m	지하	보라매역(7호선)
105	3K240.0	0K850.0m	지하	보라매공원
106	3K940.0	0K700.0m	지하	당곡사거리
107	4K680.0	0K740.0m	지하	신림역(2호선)
108	5K690.0	1K010.0m	지하	신본교 인근
109	6K750.0	1K060.0m	지하	신성초등학교
110	7K620.0	0K870.0m	지하	서울대앞

## 5. 차량기지(위치)

○우이-신설 연장선 : 강북구 우이동 (우이-신설 차량기지 활용)

○동북선 : 노원구 중계동 노원자동차 학원부지 일대

- 면목선 : 중랑구 망우동 (6호선 신내차량기지 인근)
- 서부선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앞 공영주차장 일대
- DMC경전철 : 마포구 상암동 상암공영차고지 일대
- 목동선 :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영버스차고지 인근)
- 신림선 : 관악구 신림동 신림로 교통광장 일대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38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21호, 2008. 6.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제2조	2의 “우수 판정을 받고“를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우수 판정을 받고“로 수정	문구 수정
	3의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를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 또는 장비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	문구 수정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측정분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제5조제3항	“각 기술위원회별로 9명”을 “각 기술위원회별로 외부 또는 과학원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9명”으로 수정	문구 수정
제6조제1항	“1. 정도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	호 삭제
	“2.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적합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우수 또는 미달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호 변경 및 문구 수정